

제2571호
2018. 03. 2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신 선 애
전화: 3396-4952
(<http://www.junggu.seoul.kr>)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조 례

제1419호 :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고 시

제2018-26호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6

제2018-27호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7

제2018-28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8

● 공 고

서울특별시 제2018-702호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9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2 / FAX.(02)3396-9022/3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8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19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 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3 제11호 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점용 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 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 시설물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8.)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 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야 할연간 점용료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 용료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제3조----- -----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② (생 략)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② (현 행과 같음)
③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 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③----- -----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

신·구 별표1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 서 정한 점 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 선대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 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 서 정한 점 용물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 을 곱한 금액	
	노점			토지가격에 0.007 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07 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 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자동판매기, 상품진 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의 상품진열 대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3를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 을 곱한 금액	2.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차양·비가리개시설· 안내판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 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 3 제11호 에서 정한 점용물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 판매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 3 제11호 에서 정한 점용물	점용면 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25 를 곱한 금액	
	전통시장내 시설 등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 는 경우)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신 설>			<신 설>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기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비고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 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 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 12.28.)				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 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 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개정 2016.12.2 8.)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제정이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적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가. 점용료 산정기준 신설·조정**

-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내시설물”에 해당하는 요율
신설 (0.02) (안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개 연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의 증가율을 전년도 점용료의 100분의 10으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반영 (안 제6조)
- 과오납 이자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를 따르도록 하던 것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도록 함 (안 제9조)

고 시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26호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지적도근점 번호	평면좌표(GRS80타원체)		평면좌표(베셀타원체)		소재지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종선좌표 (X)	횡선좌표 (Y)	
9554	551396.88	199875.84	451091.46	199806.02	충무로5가 55-20
9555	551356.16	199856.44	451050.74	199786.62	충무로5가 78-8
9556	551292.03	199823.45	450986.61	199753.64	필동3가 17-7
9557	551260.21	199796.89	450954.79	199727.08	필동3가 5-4
9558	551350.30	199890.23	451044.88	199820.42	충무로5가 55-1
9559	551339.27	199904.60	451033.85	199834.79	묵정동 1-33
9560	551314.58	199896.09	451009.15	199826.28	묵정동 1-33
9561	551306.94	199899.65	451001.51	199829.84	묵정동 1-33
9562	551273.54	199891.53	450968.11	199821.71	묵정동 1-36

기준점명	중부원점	
설치일	2018년 3월 3일	
표지의재질	표철	
측량성과보관장소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비고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27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 로 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 도 로 명 부여기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5가 674 외 48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3	2018.03.21.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3	2018.03.21.	통일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09.07.10.	우리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바라는 도로명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0-1 외 1필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8	2018.03.21.	퇴계로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4.22.	조선시대 유학자 이황의 호 인용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2가 15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24길 354	2018.03.21.	동호로24길의 기초번호로 부여
		2010.06.30.	동호로를 중심으로 일련번호 부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28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03월 2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1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5-5	2018.03.21.	건물말소
2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5-6	2018.03.21.	건물말소
3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5-7	2018.03.21.	건물말소
4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21길 25-9	2018.03.21.	건물말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4)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702호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7-260호(2007.7.30.)로 1단계 구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09-378호(2009.9.24.)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119호(2014. 3 .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9호(2014. 1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04호(2015.1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62호(2016.3.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03호(2016.4.7.)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4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1호(2017.1.26.)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94호(2017.11.09.)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6-3-1,2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38호(2017.11.30.)로 재정비촉진계획(세운3-4,5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 3. .

서울특별시장

가. 공람기간 : 2018. 3.22 ~ 2018. 4.5.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02-2133-8511)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02-2148-2686)

중구청 도시관리국 도심재생과(☎02-3396-5753)

다. 공람내용 :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1)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개요

지 구 명 (지구유형)	위 치	면 적 (㎡)			개발기간
		기 정	변 경	변경후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2006.10 ~ 2023.12

2) 세운재정비촉진계획(변경)

①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면 적(㎡)	비율(%)	면 적(㎡)	비율(%)		
합 계		439,356.4	100.0	439,356.4	100.0	-	-
계획 기반 시설	소 계	158,256.0	36.0	158,256.0	36.0	-	-
	공공청사	7,600.0	1.7	7,600.0	1.7	-	중구청 존치
	학교시설	13,055.1	3.0	13,055.1	3.0	-	덕수중학교 존치
	하 천	8,423.4	1.9	8,423.4	1.9	-	청계천
	공 원	10,109.7	2.3	8,119.1	1.8	감) 1,990.6	4개소
	녹 지	7,541.2	1.7	7,401.0	1.7	감) 140.2	8개소
	연구시설	1,200.0	0.3	1,200.0	0.3	-	-
	도 로	110,326.6	25.1	112,457.4	25.6	증) 2,130.8	-
택지 (획지)	소 계	281,100.4	64.0	281,100.4	64.0	-	-
	복합개발용지	254,217.4	57.9	254,217.4	57.9	-	촉진구역
	남산자이(주거복합)	5,216.5	1.2	5,216.5	1.2	-	존치지역
	국도호텔(상업:숙박)	1,800.0	0.4	1,800.0	0.4	-	
	중앙대코플라자	1,060.6	0.2	1,060.6	0.2	-	
	명보아트홀	1,256.5	0.3	1,256.5	0.3	-	
	매일경제신문	1,778.4	0.4	1,778.4	0.4	-	
	세운상가군	15,771.0	3.6	15,771.0	3.6	-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운상가군은 세운가동상가~진양상가에 이르는 일련의 상가를 의미함

※ 구체적인 입체·중복결정사항은 V.기반시설 설치계획 참조

② 인구주택수용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③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④ 공원·녹지 조성 및 환경보전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⑤ 교통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⑥ 경관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⑦ 광고물관리계획, 폐기물처리에 관한 계획 등 기타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⑧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 고
기정	세운2-1~ 세운2-35구역	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	38,962.6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35개 구역
기정	세운3-1~ 세운3-10구역	중구 입정동 97-4번지 일대	41,127.3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9개 구역
기정	세운4구역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32,223.7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1개 구역
기정	세운5-1~ 세운5-11구역	중구 산림동82-5번지 일대	38,576.0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11개 구역
기정	세운6-1-1~ 세운6-4-23구역	중구 초동 10-1번지 일대	167,311.4	재개발사업 (도시정비형)	113개 구역

※ 분할된 구역별 세부면적은 공람도서 참조

⑨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에 관한 건축계획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용적률			건폐율	높이		비 고
			기준	허용	상한		기준	최고	
기정	세운2-1~8, 25,28,29,32, 33,35구역	간선부	600% 이하	700% 이하	기반 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적용	60% 이하 (5층이하 저층부 80% 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2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m			50m이하		
기정	세운3-1~3 3-4,5구역 3-8-3-10구역	간선부		800% 이하			80m	90m이하	중규모 구역
기정	세운3-6,7구역	이면부		60m			70m이하		
기정	세운4구역			700% 이하			-	70m이하	통합구역
기정	세운5-1~2,4-6 9~11구역	간선부		800% 이하			80m	90m이하	중규모 구역
기정	세운5-3,7,8, 구역	이면부		60m			70m이하		
기정	세운6-1-1~4, 7-9,11,21,24, 29,32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6-1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m			50m이하		
기정	세운6-2-1~5, 7~9,35,36,41, 47,48,50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6-2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m			50m이하		
기정	세운6-3-1,2,4구 역	간선부		800% 이하			80m	90m이하	중규모 구역
기정	세운6-3-3구역	이면부		60m			70m이하		
기정	세운6-3-5~9 구역	간선부		700% 이하			40m	5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6-4-1,4,5, 18,22,23구역	간선부		700% 이하			60m	70m이하	소규모 구역
기정	세운6-4구역내 간선부 외 구역	이면부					40m	50m이하	

※ 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추후 문화재청 협의 및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운6-3-5~9구역은 소규모구역 이면부의 용적률, 높이 기준 적용

- ⑩ 기반시설 비용분담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⑪ 임대주택 건설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대책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⑫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⑬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⑭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⑮ 지구단위계획구역 : 신설
- ㉞ 세운상가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고
종로구 장사동 116-4번지 일대	-	증) 45,076.6	45,076.6	45,076.6	존치되는 세운상가군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㉟ 세운상가군 지구단위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㊱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고
중구 인현동1가 310-68번지 일대	-	증) 231,984.2	231,984.2	231,984.2	촉진지구 내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㊲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 ⑯ 세운지구 재생관리지침 : 신설

- ㉞ 세운지구 재생관리지침

- 세운재생자문단 운영 : 시 방침으로 운영 중인 자문단을 촉진계획으로 결정
- 세운재생자문단 주요자문내용 : 세운활성화, 데크 연결, 옛길(물길), 근·현대 건축물 보존 등

- ㉟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령제10조제1항4호 및 제2항4호)

- 촉진구역 정형화 위한 소규모구역의 구역계 변경
-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
- 입체적 보행연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 건축물 제공에 따라 측량 및 건축계획의 변경

- 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

- ㉞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㉟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439,356.4	-	439,356.4	100.0	
일반상업지역	439,356.4	-	439,356.4	100.0	

㉞ 용도지구

㉠ 미관지구

■ 미관지구 결정조서

구분	지구명	구간	연장(m)	폭원(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종로2가~동대문	2,400	양측12	57,6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종로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시청앞광장~을지로6가	2,700	양측12	64,8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을지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동아일보 앞~청계천6가	2,800	양측12	67,2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청계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필동1가~종로3가	1,000	양측12	24,0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삼일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목정동~종로4가	900	양측12	21,6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목정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서울역~광희동 로터리	3,200	양측12	76,800	건교부고시 519호(73.12.31)	퇴계로지구
기정	중심지미관지구	태평로~광희로	2,700	양측12	64,800	건교부고시 290호(73.7.4)	태평로지구

㉡ 방화지구

■ 방화지구 결정조서(사업시행인가시 폐지)

구분	지구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방화지구	서대문~종로~동대문간	65,977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종로
기정	방화지구	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	42,609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청계천
기정	방화지구	시청앞~을지로6가간	41,400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을지로지구
기정	방화지구	서울역앞~광희동간	55,46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퇴계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돈화문간	36,94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돈화문로
기정	방화지구	퇴계로가~원남동로터리간	27,345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배오개길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신설

㉠ 세운상가군 지구단위계획구역

■ 세운상가군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고
종로구 장사동 116-4번지 일대	-	증) 45,076.6	45,076.6	45,076.6	존치되는 세운상가군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위치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비고
중구 인현동1가 310-68번지 일대	-	증) 231,984.2	231,984.2	231,984.2	촉진지구 내 인현동 인쇄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㉔ 도시계획시설 설치 계획 :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관련)

㉑ 교통시설

㉓ 도로

■ 도로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7	40~47 (3.5~6.5m)	주간 선 도로		4,000 (432)	서대문광 장 (종로3가 45-4)	동대문광 장 (종로4가 50-10)	일반도 로	-	총독부고 722호 (36.12.26)	4구역
기정	대로	2	3	30	집산 도로		1,800 (464)	시청앞광 장	을지로6가	일반도 로	-	총독부고 722호 (36.12.26)	- 을지로 - 대림상가 ~ 삼풍상가 (을지로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6.0m~10.6m)
변경	대로	2	3	30	집산 도로		1,800 (464)	시청앞광 장	을지로6가	일반도 로	-	총독부고 722호 (36.12.26)	
기정	중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459)	저동1가	광희동광 장	일반도 로	-	총독부고 722호 (36.3.26)	- 마른내길 - 호텔PJ~ 신성상가 (마른내길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7~44.6m)
변경	중로	1	29	20	집산 도로		1,450 (459)	저동1가	광희동광 장	일반도 로	-	총독부고 722호 (36.3.26)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54	충무로4 86-3	충무로4가 47-3	일반도 로	-	서울시 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중로	2	126	4~19	집산 도로		850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 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 호 (14.3.27)	- 공원면적 일부 도로 연장 (폭15m) - 삼풍상가-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0~15.0m)
변경	중로	2	126	4~19	집산 도로		850	종로3가 45-4	충무로4가 125	일반도 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 호 (14.3.27)	

※()는 지구내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 과 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27	19	집산 도로	780	종로3가 32-8	충무로4 가 116-2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 공원면적 일부 도로 연장 (폭 19m~26.5m) - 삼풍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 4.0~15.0m)
변경	중로	2	127	19~21	집산 도로	780	종로3가 32-8	충무로4 가 116-2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5	충무로4가 66-3	충무로4 가 99-9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234호 (84.4.27)	6-4구역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89	을지로3가 164-1	입정동 139-4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7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244	인현동2가 134-3	을지로4 가 267-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기정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 로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130호 (03.5.26)	- 청계천 북측 - 세운상가가동 ~ 청계상가 보행데크
변경	중로	3	-	13.5 ~18	집산 도로	5,390 (474)	세종로 광장	고산자 로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130호 (03.5.26)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 15~16.6m)
기정	중로	3	-	12~ 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 로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130호 (03.5.26)	- 청계천 남측 - 세운상가가동 ~ 청계상가 보행데크
변경	중로	3	-	12~ 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 로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130호 (03.5.26)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 15~16.6m)
기정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16	산림동 250-1	입정동 122-2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1	산림동 278-1	입정동 210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3구역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116	주교동 170-1	산림동 83-1	일반 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구분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로	1	5	10	국지도로	132	주교동 184-2	산림동 5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소로	1	6	10.5	집산도로	56	종로	배오개길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6-103호 (16.04.07)	4구역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21	장사동 182-3	장사동 233-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08	인현동1가 99-1	을지로3가 282-9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230	인현동1가 94-3	을지로4가 314-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34	인현동2가 198-2	인현동2가 99-1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65	인현동1가 136	초동 39-8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87	충무로3가 34-8	인현동1가 110-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217	충무로4가 125-44	충무로3가 37-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140	필동2가 5-3	충무로4가 5-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15	필동2가 13-20	충무로4가 125-4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70	충무로4가 125-54	충무로4가 129-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19	예관동 17-1	을지로4가 293-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7	인현동2가 181-47	인현동2가 15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73	충무로4가 38	인현동2가 181-1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1	4	국지도로	219	장사동 106-2	장사동 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9	종로3가 162-1	종로3가 45-4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78	장사동 41-2	장사동 2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79	장사동 47-5	장사동 57-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86	장사동 74	장사동 83-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70	장사동 221-3	장사동 21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7	6	국지 도로	55	장사동 204-1	장사동 19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2구역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74	산림동 112-5	산림동 18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5구역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67	을지로3가 291-18	을지로3가 291-4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0	4	국지 도로	122	을지로3가 285-3	을지로3가 271-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1	6	국지 도로	92	인현동1가 55-5	초동 2-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65	인현동1가 15-5	인현동1가 31-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35	초동 22-2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73	인현동1가 58-20	초동 22-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5	4	국지 도로	61	인현동1가 59-20	인현동1가 99-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5	인현동1가 5-10	인현동2가 95-13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7	6	국지 도로	77	인현동2가 99-28	인현동1가 70-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1구역
기정	소로	3	18	8	국지 도로	211	충무로4가 11-2	인현동1가 114-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19	6	국지 도로	73	인현동2가 192-20	인현동2가 20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0	6	국지 도로	88	인현동2가 182-11	인현동2가 225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1	6	국지 도로	73	충무로4가 14	인현동1가 132-7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82	충무로4가 24-6	인현동2가 189-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3	6	국지 도로	40	필동2가 13-6	필동2가 13-6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2구역
기정	소로	3	24	6	국지 도로	45	인현동2가 3	인현동2가 151-1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3구역
기정	소로	3	25	6	국지 도로	85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36-2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6	4	국지 도로	76	인현동2가 168-1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기정	소로	3	27	6	국지 도로	179	충무로4가 55	인현동2가 181-80	일반도로	-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6-4구역

■ 도로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 2-3	대로 2-3	• 대림상가 ~ 상풍상가 (을지로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6.0m~10.6m)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대림상가~상풍상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중로 1-29	중로 1-29	• 호텔PJ~ 신성상가 (마른내길상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폭3.7~44.6m)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호텔PJ~신성상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중로 3-	중로 3-	• 세운상가가동 ~ 청계상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15.2~16.6m) • 세운상가가동 ~ 청계상가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 결정(폭15~15.5m)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청계천 북측 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청계천 남측 세운상가가동 ~청계상가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중로 2-126	중로 2-126	• 공원면적 일부 도로 연장 (폭15m) • 상풍상가~진양상가 서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결정 (폭3.0~15.0m)	• 다시세운광장(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상풍상가~진양상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중로 2-127	중로 2-127	• 공원면적 일부 도로 연장 (폭19m~26.5m) • 상풍상가~진양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 보행자전용도로결정 (폭4.0~15.0m)	• 다시세운광장(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상풍상가~진양상가 연결되는 보행데크를 보행자전용도로 결정

■ 도로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 조서 (높이는 해수면 기준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 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2-126 ①	집산 도로	종로3가 32-3일대 (세운상가서측)	면적(㎡)	5,193.4	-	5,193.4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세운상가가동 ~ 대림상가 (서고2017~198)
				길이(m)	295.1	-	295.1		
				폭(m)	12.9~14.5	-	12.9~14.5		
				높이(m)	23.0~31.35	-	23.0~31.35		
기정	2-127 ②	집산 도로	을지로4가 250 일대 (세운상가동측)	면적(㎡)	5,257.3	-	5,257.3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세운상가가동 ~ 대림상가 (서고2017~198)
				길이(m)	296.5	-	296.5		
				폭(m)	12.9~14.5	-	12.9~14.5		
				높이(m)	22.7~31.15	-	22.7~31.15		
신설	2-126 ③	집산 도로	종로3가 32-3일대 (상풍상가서측)	면적(㎡)	-	증)8,116.7	8,116.7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상풍상가~ 진양상가
				길이(m)	-	증)512.6	512.6		
				폭(m)	-	증)15.0~19.0	15.0~19.0		
				높이(m)	-	증)23.4~33.7	23.4~33.7		

신설	2-127 ④	집산 도로	을지로4가 250 일대 (삼풍상가동측)	면적(㎡)	-	증)7,995.1	7,995.1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삼풍상가~ 진양상가
				길이(m)	-	증)504.5	504.5		
				폭(m)	-	증)15.0~18.0	15.0~18.0		
				높이(m)	-	증)23.4~33.2	23.4~33.2		
신설	3- ⑤	집산 도로	종로3가 (세운상가 남측)	면적(㎡)	-	증)517.4	517.4	서울시고시 제130호 (03.5.26)	청계천 북측 도로
				길이(m)	-	증)15.8~17.0	15.8~17.0		
				폭(m)	-	증)15.2~16.6	15.2~16.6		
				높이(m)	-	증)23.16~31.35	23.16~31.35		
신설	3- ⑥	집산 도로	종로3가 (청계상가 북측)	면적(㎡)	-	증)502.3	502.3	서울시고시 제130호 (03.5.26)	청계천 남측 도로
				길이(m)	-	증)15.5~17.7	15.5~17.7		
				폭(m)	-	증)15.0~15.5	15.0~15.5		
				높이(m)	-	증)23.16~31.35	23.16~31.35		
신설	2-3 ⑦	집산 도로	을지로3가 282-8 일대 (을지로 상부)	면적(㎡)	-	증)511.0	511.0	총독부고 제722호 (36.12.26)	대림상가 ~ 삼풍상가 (을지로 상부)
				길이(m)	-	증)29.8~30.3	29.8~30.3		
				폭(m)	-	증)6.0~10.6	6.0~10.6		
				높이(m)	-	증)23.30~35.75	23.30~35.75		
신설	1-29 ⑧	집산 도로	인현동2가 120-22일대 (마른내길 상부)	면적(㎡)	-	증)244.2	244.2	총독부고 제722호 (36.12.26)	호텔PJ ~ 신성상가 (마른내길 상부)
				길이(m)	-	증)18.2~21.7	18.2~21.7		
				폭(m)	-	증)3.7~44.6	3.7~44.6		
				높이(m)	-	증)28.05~39.95	28.05~39.95		
신설	3-3 ⑨	국지 도로	인현동2가 142-2일대 (6-3-4구역 서측)	면적(㎡)	-	증)80.7	80.7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3.27)	6-3-4구역 서측
				길이(m)	-	증)12.0	12.0		
				폭(m)	-	증)6.7	6.7		
				높이(m)	-	증)29.5~35.8	29.5~35.8		

■ 도로 입체적결정 (변경) 조서 (높이는 해수면 기준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1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예지동 85번지 일대	면적(㎡)	-	증) 51.6	51.6	-	세운4구역 (2층)
				길이(m)	-	증) 18.4	18.4		
				폭(m)	-	증) 2.8	2.8		
				높이(m)	-	증) 28.2	28.2		
신설	2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예지동 85번지 일대	면적(㎡)	-	증) 82.2	82.2	-	세운4구역 (7층)
				길이(m)	-	증) 13.0~13.6	13.0~13.6		
				폭(m)	-	증) 6.2	6.2		
				높이(m)	-	증) 49.4	49.4		
신설	3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예지동 85번지 일대	면적(㎡)	-	증) 88.7	88.7	-	세운4구역 (2층)
				길이(m)	-	증) 14.3	14.3		
				폭(m)	-	증) 6.2	6.2		
				높이(m)	-	증) 28.1	28.1		
신설	4	지하도 (연결통로)	을지로4가 4-8일원	면적(㎡)	-	증) 229.5	229.5		대림상가 지하연결통로
				길이(m)	-	증) 42.0	42.0		
				폭(m)	-	증) 5.4	5.4		
				높이 (m, 지하)	-	증) 15.6	15.6		
신설	5	지하도 (연결통로)	을지로4가 4-8일원	면적(㎡)	-	증) 106.3	106.3	-	을지로 지하보도~ 대림상가 지하연결통로
				길이(m)	-	증) 19.9	19.9		
				폭(m)	-	증) 5.4	5.4		
				높이 (m, 지하)	-	증) 15.6	15.6		
신설	6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인현동1가 310-68	면적(㎡)	-	증) 96.5	96.5	-	삼풍상가 데크 (3층)
				길이(m)	-	증) 20.1	20.1		
				폭(m)	-	증) 4.8	4.8		
				높이(m)	-	증) 33.0	33.0		
신설	7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	증) 21.8	21.8	-	세운 6-3-3구역 (2층)
				길이(m)	-	증) 3.3	3.3		
				폭(m)	-	증) 6.72	6.72		
				높이(m)	-	증) 33.0	33.0		
기정	8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0-2일대	면적(㎡)	155.7	-	155.7	서고 제2017-394호	세운 6-3-1,2구역
				길이(m)	33.9	-	33.9		
				폭(m)	3.0~5.05	-	3.0~5.05		
				높이(m)	25.5~38.0	-	25.5~38.0		
신설	9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을지로4가 312-1번지 일원	면적(㎡)	-	증) 11.9	11.9	-	세운 6-1-8구역 (2층)
				길이(m)	-	증) 3.0	3.0		
				폭(m)	-	증) 4.0	4.0		
				높이(m)	-	증) 34.0	34.0		
신설	10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인현동2가 142-2일대	면적(㎡)	-	증) 42.0	42.0	-	세운 6-3-4구역 (2층)
				길이(m)	-	증) 6.2	6.2		
				폭(m)	-	증) 6.7	6.7		
				높이(m)	-	증) 35.8	35.8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도로 입체적결정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73.0㎡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2F) H=34.1m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과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 지정
2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224.7㎡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7F) H=50.0m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옥상과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 지정
3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134.3㎡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2F) H=34.1m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과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한 연결통로 지정
4	지하도 (연결통로)	- 대림상가 지하 연결통로 (면적 : 증)229.5㎡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하(B1F) H=15.6m	1972년 지하도를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만남광장, 거점공간 등 세운재생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입체적 결정 지정
5	지하도 (연결통로)	- 을지로 지하보도~대림상가 연결통로 (면적 : 증)106.3㎡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하(B1F) H=15.6m	을지로 지하보도와 인접한 대림상가 지하공간을 직접 연계하여 보행자의 직접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입체적 결정
6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 (면적 : 증)96.5㎡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3F) H=35.9m	삼풍상가 3층 데크는 대림상가 데크 기부채납 문서를 근거로 서울시 소유이므로 향후 데크 신설시 연결성 확보를 위한 폭 4.8m 연결통로 지정
8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80.8㎡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2F) H=33.0m	향후 세운상가 2단계 구간 (삼풍상가 ~ 진양상가) 데크 신설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삼풍상가 동측에서 6-3-3구역 연결통로 지정
9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33.4㎡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3F) H=34.0m	향후 세운상가 2단계 구간 (삼풍상가 ~ 진양상가) 데크 신설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삼풍상가 서측에서 6-1-8구역 연결통로 지정
10	보행자 전용도로 (연결통로)	- 데크 연결 통로 설치(면적 : 증)181.3㎡ - 세부사항 : 입체적 결정범위 - 지상부(2F) H=35.8m	향후 세운상가 2단계 구간 (삼풍상가 ~ 진양상가) 데크 신설시 보행네트워크 구축 및 연결성 확보를 위해 호텔PJ 동측에서 6-3-4구역 연결통로 지정

⑥ 철도

■ 철도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연장(m)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1	철도	고속철도(5호선)	종로구 종로4가 32-8번지 일대	(80)	(1,397)	건교부고시695호 (90.10.19)	세운 4구역
기 정	2	철도	고속철도(3호선)	벽제 ~ 양재동간	40.7km (310)	(3,479)	건교부고시53호 (80.2.22)	세운 6-2구역
기 정	3	철도	도시철도(5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주교동 122일대	-	6,259.4	건설부고시 제151호(91.3.25)	세운 6-3구역
기 정	4	철도	도시철도(2호선) 을지로4가정거장	을지로4가 261	205	5,998.5	건설부고시 제232호(77.12.1)	세운 6-3구역

※()는 지구내 / ※ 상기 면적은 구역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철도 입체적결정 결정 조서 (높이는 해수면기준임)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구분	기정	변경	변경후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3	철도	을지로4가 206-1 일대	면적(㎡)	69.7	-	69.7	건설부고시 제151호 (91.3.25)	(5호선)
				길이(m)	8.6	-	8.6		
				폭(m)	10.0	-	10.0		
				높이(m, 지하)	14.6~30.4	-	14.6~30.4		
세 부 사 항	입체적 결정범위 1. 배오개길 서측 환기구 일부 - 지상부 : A=19.3㎡, H=24.5m~30.4m - 지하부 : A=69.7㎡ (지상중복 19.3㎡), H=14.6m~24.5m								
기정	4	철도	을지로4가 250 일대	면적(㎡)	728.5	-	728.5	건설부고시 제232호 (77.12.1)	(2호선)
				길이(m)	53.9	-	53.9		
				폭(m)	33.1	-	33.1		
				높이(m, 지하)	11.5~29.5	-	11.5~29.5		
세 부 사 항	입체적 결정범위 1. 을지로4가교차로 남서측 출입시설, 냉각탑 일부 - 지상부 : A=292.6㎡, H=24.5m~29.5m - 지하부 : A=640.3㎡ (지상중복 204.4㎡), H=11.5m~24.5m 2. 을지로 남측 환기구 일부 - 지하부 : A=2.7㎡, H=15.4m~22.8m								

㉠ 공간시설

㉠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경관 녹지	장사동 142	1,303.5	감) 140.2	1,163.3	서울시 고시 제2016-103호 (16.04.07)	- 녹지 면적 감소 (140.2㎡)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21.5㎡)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옥상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46.9㎡)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45.6㎡)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산림동 190-20	668.1	-	668.1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청계상가 동측
기정	3	녹지	경관 녹지	산림동 141-1	1,192.4	-	1,192.4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대림상가 동측
변경	4	녹지	경관 녹지	인현동2가 57-3	2,297.9	-	2,297.9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 삼풍상가 동측 지하도와 중복결정 (341.5㎡) - 삼풍상가 동측 3층 보행자전용도로(데크) 중복결정 (66.0㎡) - 세운6-3-3구역 인접 삼풍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47.0㎡) - 호텔PJ동측 보행자전용도로(데크) 중복결정 (197.3㎡)

기정	5	녹지	경관 녹지	인현동2가 135-48	517.2	-	517.2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신성상가 동측
기정	6	녹지	경관 녹지	인현동2가 181-31	757.3	-	757.3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진양상가 동측
기정	7	녹지	경관 녹지	충무로4가 112-1	371.0	-	371.0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진양상가 동측
기정	8	녹지	경관 녹지	종로4가 32-8도 외	433.8	-	433.8	서울시 고시 제2016-103호 (16.04.07)	종로4가사거리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경관 녹지	- 면적감소 - 기정면적 : 1,303.5㎡ - 변경면적 : 1,163.3㎡ (감 140.2㎡) - 위치 : 종로4가 32-8도 외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 면적 : 21.5㎡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옥상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 면적 : 46.9㎡ - 세운4구역 인접 세운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 면적 : 45.6㎡	- 세운4구역 종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차량동선을 종로28길로 진입, 종로로 출입하는 호텔서비스차량 동선만 허용하는 것으로 교통영향 평가 심의 결과 반영 - 세운4구역에서 세운상가의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결되는 보행데크(보행자전용도로)와 경관녹지 중복결정
4	경관 녹지	- 삼풍상가 동측 지하도와 중복결정 - 면적 : 341.5㎡ - 삼풍상가 동측 3층 보행데크(보행자전용도로)와 중복결정 - 면적 : 66.0㎡ - 세운6-3-3구역 인접 삼풍상가 3층 연결 보행자전용도로 중복결정 - 면적 : 47.0㎡ - 호텔PJ 동측 보행데크(보행자전용도로)와 중복결정 - 면적 : 197.3㎡	- 을지로지하보도~삼풍상가 동측 경관녹지와 지하도 출입시설 (지하연결통로) 중복결정 - 세운상가군 입체보행네트워크 (삼풍상가~호텔PJ구간 신설되는 보행데크와 주변지역 연결) 구축을 위해 경관녹지와 중복결정

㉔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문화 공원 1	공원	문화공원	종로3가 175-4	3,748.3	감) 1,990.6	1,757.7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다시세운광장
기정	소공 원 1	공원	소공원	입정동 97-4	2,634.1	-	2,634.1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세운3구역
기정	소공 원 2	공원	소공원	산림동 56-5	2,409.6	-	2,409.6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세운5구역
변경	소공 원 3	공원	소공원	예관동 53-4	1,317.7	-	1,317.7	서울시 고시 제2014-119호 (14.3.27)	추후 도심휴게공간, 도심 제조산업 스마트 앵커시 설, 주차장 복합화하기 위한 중복결정 추진 (예시 : 지상층-소공원, 지하층-연구시설, 주차장 등)

※ 상기 면적은 구적에 의한 면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공원 1	공원	· 면적감소 - 기정면적 : 3,748.3㎡ (감 1,990.6㎡) - 변경면적 : 1,757.7㎡ - 위치 : 종로3가 175-4	· 다시세운광장(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변경 (감 1,990.6㎡)

㉕ 공공·문화체육시설

㉔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1	학교	중학교	중구 인현동2가 3번지 일원	13,055.1	-	13,055.1	서울시고시 10호 (79.1.10)	덕수 중학교 (존치)

㉕ 연구시설

■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1	연구시설	중구 예관동 52-11번지 일원	1,200	-	1,200	서고 제2014-119호 (14.3.27)	추후 도심제조산업 스마트 앵커시설, 주차장 및 청년주택을 복합화하기 위한 입체·중복결정 추진 (예시 : 지상층-청년주택, 연구시설 (공공청사), 지하층-연구시설, 주차장 등)

㉠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청사	공공청사	중구 예관동 83-10번지 일원	7,600.0	-	7,600.0	서울시고시 106호 (77.3.15)	중구청

㉡ 방재시설

㉠ 하천

■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연장(km)	폭원(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지방1,2급 (지방2급)	종로구 서린동 148	성동구 마장동 신답철교	-	5.76 -지방1급 1.31km -지방2급 4.45km	19~113 (20~22)		서울시 고시 제2003-423호 (2003. 12. 26)	하천, 보행자 전용도로 중복결정

※()는 지구내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하천	· 중복결정 - 위치 : 종로구 장사동 세운교 일대	· 청계천 보행교 설치로 인한 보행자전용도로와 중복결정(폭16.7m~17.7m/ 면적521.0㎡)

※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관련 사항 : 생략(공람도서와 같음)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

다만,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구의회 의결,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지문 및 심의 등을 거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되므로 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